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5 선고 2020가단474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20. 6. 17.

판결 선고2020. 7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2. 14.부터 2010. 1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가. 피고 1, 2, 4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3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임정윤

별지